
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복기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6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0.

발 의 자 : 복기왕 · 박용갑 · 최혁진
문진석 · 김현정 · 이건태
김우영 · 안태준 · 정준호
전용기 · 허종식 · 손명수
이연희 · 천준호 · 박상혁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거 전체 부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용산기지 임시 개방은 법적 근거 미비를 비롯해, 해당 부지의 환경 오염 정화 및 위해성 저감 조치가 미흡하여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, 과거와 차별화되고 책임 있는 접근을 통해 용산공원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시급함.

이에 용산공원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고, 이를 통해 국민들이 용산공원의 조성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(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제1호).

특히 반환부지의 유지·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환경 관리를 필수적

으로 포함하고, 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여 과거의 환경 부실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의 2).

나아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캠프 킴 등 복합 시설조성지구에서는 획일적인 공원·녹지 기준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과거와 같은 단순한 외형적 개방 대신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, 청년층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5조의2 신설).
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용산공원조성지구”를 “용산공원조성지구(제1항 단서에 따라 지구 일부에 대하여 용산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부지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로 한다.

다만, 용산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산공원 조성지구의 일부에 대하여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효율적으로 유지·관리”를 “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유지·관리(환경관리를 포함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반환부지의 유지·관리 및 운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복합시설조성지구에 대한 특례) 제26조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시행자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

를」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
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또
는 녹지 확보에 대하여 완화된
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